

검 토 보 고 서

1. 대상규정

-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입법초안 업무처리 규정안

2. 검토경과

- 제출연월일 : 2012. 4. 6(금)
- 제출자 : 김영길 의원 외 2명
- 위원회회부 : 2012. 4. 9(월)
- 위원회심사 : 2012. 4. 16(월)

3. 주요내용

- 의원 입법초안 검토 전문위원 지정
 - ▶ 상임위원회별
- 집행부에 의견조회
 - ▶ 10일 이내
- 의원 입법초안 검토 기간 지정
 - ▶ 제·개정 30일, 일부개정 15일
- 검토서 협의
 - ▶ 검토의뢰 의원 및 전문위원
- 검토의뢰서 접수 및 철회치법규의 제·개정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

4. 검토의견

- 의원발의 입법건에 대한 체계적인 처리절차 규정이 없어 안전에 따라 처리과정이 달라 업무처리의 혼선을 가져올 뿐 아니라,
- 집행부의 의견조회나 처리과정도 명확하지 않아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 한계도 불명확하여 의견충돌의 소지가 있으며,
-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의원발의 입법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집행부와 협의 처리과정을 체계화하여, 업무처리의 원활을 기하고 문제발생을 사전에 조율하고자 하는 것으로 『의원입법 초안 업무처리 규정』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